

원·하청 경영진 3명 무죄...현장 관계자는 줄줄이 유죄

‘화정아이파크 붕괴’ 3년만에 1심 선고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골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이 최장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장·건설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단체는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3년만에 1심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월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관련자다.

재판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4년, 사고가 발생한 2공구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건축시공담당자 C씨에게는 징역 2년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 하청업체 현장소장 D씨는 징역 4년, 하청업체 전무이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나머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화정아이파크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억원, 3억원, 1억원씩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하청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등을 관리한 관련자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직접적인 현장 관리감독 주의 의무 없어”

현장감독 2명 4년·안전관리 3명 2~3년...“국민 법 감정 외면” 지적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협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8개월간 장기화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고원인= 재판부는 붕괴 사고 직접 원인으로 하부 3개층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 등 2가지를 인정했다.

39층 PIT(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이 버틸 수 없는 하중이 취약한데도 구조 변경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무거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했고 하부 3개층에 설치돼 있어야 할 지지대(일명 동바리·임시 비계 기둥)를 조기 철거해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대는 30여개로 설계시 고려한 하중에 비해 1.96~2.224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4대에서 7대로 확대 설치하고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현장관계자들도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대해 승낙을 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2~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했다더라도 23층까지 연쇄 붕괴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붕괴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사고 범위가 축소됐더라도 28~34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민사회 ‘아쉬운 판결’=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해처발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대해처발법 시행 이전 사고라서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진대미문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기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시키는대로 일한 소장 등만을 처벌하는 건 대기업의 꼬리자르기에 사법부가 동참한 것”이라면서 “철거 후 재시공 중인 아파트의 안전만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옥상층이 무너져 23층까지 연쇄 붕괴됐다. 창호작업 등을 하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술자리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흥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흥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 기소에 놓였다.

목포경찰은 지인에게 흥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흥기에 손바닥을 찌른 B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인의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흥기의 출처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상해치사 가해자, 피해자와 절연한 친모와 합의했다면?

화제의 판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절연한 법정 상속인과 합의했다면 ‘특별 감경 사유’가 될까.

법원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참작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고 퇴사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

법원 “감경 사유 아닌 참작 사유” 폭행한 후 구호조치 안해 사망 광주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다 이날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귀가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인 친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 A씨는 합의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피해자 동생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친모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따로 살았고 사

망 직전까지 교류 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합의를 양형감경 사유로 보지 않고, 참작사유로 간주했다. 기본 권고 양형기준(3~5년)의 형량 범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피해자의 가정 환경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A씨가 퇴사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면허 운전하다 역주행 광주남부경찰, 70대 입건

광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은 7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역주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산동 일대를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